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대원외국어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지(통섭)·인(공감)·용(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중등보통교육 및 외국어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3조(명칭) 본교는 대원외국어고등학교라 한다.

제4조(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22길 26(중곡동)에 둔다.

제2장 수업 연한 및 입학 자격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자격)

① 본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4.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중학교 및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예정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
5. 외국어고등학교가 없는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졸업자(학력인정자 포함)
6.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② 제①항의 지원자격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별도로 신입생 입학전형요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입학자격)

- ① 본교의 입학자격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공고하는 신입생입학전형요강에 의거 선발된 자로 한다.
- ② 신입생 전형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학전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전·편입학 및 재입학

제8조(전·편입학 방법)

- ① 전·편입학은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 ② 전·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 ①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 및 편입학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 ② 제①항 규정에 의하여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허가를 받은 자의 학년배정은 외국 정규학교의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되,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10조(재입학) 재입학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 8조(전·편입학 방법)에 따라 선발될 시 입학을 허가한다.

제4장 학과, 학급수 및 학급정원

제11조(학과)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의 총 5개 학과를 둔다.

제12조(학급수) 학급수는 학년당 10학급으로 구성한다. 독일어과 2학급, 프랑스어과 2학급, 스페인어과 2학급, 일본어과 2학급, 중국어과 2학급으로 구성하여 3개 학년 총 30학급으로 한다.

제13조(학생정원) 학급당 학생정원은 정원 내 학생 25명에 정원외 학생인원을 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정원외 학생의 구성 및 인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반영한다.

제5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교사

제14조(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생이 3년간 이수하는 총 학점은 192학점 이상으로 한다.
- ③ 192학점은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으로 구성한다.
- ④ 학생이 3년의 수업 연한 내 192학점을 균형있게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 ⑤ 정규 일과시간 내외에 편성·운영되는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학교 개설 과목은 학기당 최대 2개 과목으로 제한한다. 단, 교원 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통해 학기당 3개 이상 과목 수업을 허용한다.
- ⑥ 학교 밖 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수강 학점은 3년간 최대 8학점으로 한다.

제15조(교육과정위원회)

- ① 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교과 이수 단위 조직 및 운영계획 수립
 2. 각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
 3.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발견 및 해소 방안 연구
 4. 학칙에 정해지지 않은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
 5. 기타 위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6.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장, 교감, 교무입학부장, 교육기획부장, 교과 과장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 ④ 위원은 본교 교사, 학부모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수업일수)

- ① 연간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

제17조(수업시간 및 과목의 수업량 기준)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은 08시 20분으로 하며, 끝나는 시간은 시간표에 정해진 수업종료 시간을 따른다.
- ②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수업량 기준은 학점으로 적용한다.
- ④ 1, 2학년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6회(1회당 50분)이다.
- ⑤ 3학년의 1학점당 수업량은 학기당 최소 17회(1회당 50분)이며, 그 중 1회는 교과 융합 수업 등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8조(고사)

- ①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간 학사 일정에 따라 학기별로 일정기간을 정해 정기고사를 실시한다.
- ②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각 교과와 평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④ 학업성적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19조(징수금)

-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교육부령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수한다.

제20조(수업료감면 등)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7장 학기 및 휴업일

제21조(학기) 학년은 2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 또는 입학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운영 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

제22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 공휴일
 2. 개교기념일(5월 20일)
 3. 여름 방학, 겨울 방학, 학년말 방학
 4. 토요일 휴업일
- ② 학교장은 제16조의 수업일수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재량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①항의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생들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표창, 휴학, 자퇴 및 징계

제23조(표창)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4조(휴학)

- ①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휴학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제25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 및 보호자가 서명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징계)

- ①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②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 정지', '퇴학처분' 등으로 한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②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의 내용, 기준, 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징계 외의 지도)

- ①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징계 외의 지도 방법으로 훈육, 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훈육·훈계의 지도는 '구두주의', '격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부여'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도내용과 절차는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③ 훈육·훈계의 지도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퇴학처분)

- ① 학생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내릴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생활교육위원회)

- ① 본교 학생들의 학교폭력외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학교폭력전담기구)

- ① 본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둔다.
- ②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학교폭력 실태조사)
 2. 학교폭력 사안 초동 대처(학교장 긴급조치 여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 등)
 3.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4. 졸업 전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전담기구 구성원은 학교장이 임명하며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학생 자치활동

제31조(학생 자치활동) 학교장은 학생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32조(조직 및 운영)

-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운영한다.
- ②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교외 체험학습

제33조(교외 체험학습)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 체험학습과 개인별 체험학습으로 구분한다.

제34조(학교 체험학습)

- ① ‘학교 체험학습’은 소규모테마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을 말한다.
- ② ‘학교 체험학습’의 운영과 기간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35조(개인별 체험학습)

- ① 개인별 체험학습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 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하는 체험학습을 말한다.
- ② 개인별 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연서한 체험학습 신청서를 실시 3일 전까지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개인별 체험학습 기간은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으로 하되 시험기간, 방학기간 전·후, 학기초는 허가하지 않는다. **(단, 외국인유학생의 귀국과 관련한 개인별 체험학습은 방학기간 전·후에도 예외로 허용한다)**
- ④ 개인별 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며,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수업시수 3차시 이하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개인별 체험학습은 국내는 연속 5일, 국외는 연속 1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⑥ 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은 제③항의 체험학습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1장 수료 및 졸업

제36조(수료 및 졸업)

-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 인정 여부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3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 3.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 ③ 조기 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78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12장 학칙 개정

제39조(학칙 개정 절차)

- ① 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①항의 경우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다.
- ③ 학교장이 제안한 학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학교장이 공포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 1.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 2. 교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 3.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⑤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⑥ 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조 학칙 개정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시행일)

- ① 학칙은 2020년 6월 25일 전면 개정하여 2020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칙은 2025년 4월 7일 부분 개정하여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③ 학칙은 2026년 3월 26일 부분 개정하여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